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04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서천호 · 정성국 · 김선교
김재섭 · 임종득 · 조은희
추경호 · 김대식 · 박충권
진종오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

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을 생산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거나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을 말한다)의 케이지 시설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0.05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축산업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과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생략)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후단 신설>	4. ----- ----- ----- 이 경우, <u>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을 생산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거나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을 말한다)의 케이지 시설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0.05제곱미터로 한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